2022년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2년 소임 공제를 통해 지급 받고 종교인소득을 신고하신 스님분들 대상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종단 접수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거나 종교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진행)

▶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1월 13일(금) ~ 2월 8일(수)**
▶ 서식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oim@buddhism.or.kr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
▶ 서식 다운로드 : 대한불교조계종 소임공제 홈페이지(www.soim.or.kr) 공지사항 →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1. 연말정산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내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1쪽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작성** ▶ **2쪽** :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 작성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만 제출 : 변경사항, 추가공제·기타공제가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대상자]** - 2022년도에 처음으로 종단을 통해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스님 - 2022년도에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속명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스님 ▶ **추가 공제**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추가 공제 해당자 서류 ▶ **기타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기부금(정치자금, 법정, 지정<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2.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공제항목	내용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기본공제	본인공제(소임공제 신규등록, 등본 변경사항 o)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해당자 제출
추가공제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동주민센터, 국가보훈처, 의료기관	해당자 제출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 납입 내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해당자 제출
개인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가입/본인명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국세청, 금융기관	해당자 제출
연금계좌공제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본인명의)	연금납입확인서	국세청, 금융기관	해당자 제출
기부금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 지정(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	국세청, 기부처	해당자 제출

* 발급처 중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 간소화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 (암호 없이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증빙서류 준비 시 일자를 확인하시어 **2022년도 영수증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